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공보담당관 지정장 박현철
전화 055-350-4301 / 팩스 055-350-4555

보 도 자 료
2018. 5. 4.(금)

자료문의 : 지청장실

제 목 F 리조트 그룹 경영진,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 수사결과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18. 5. 4.(금) 골프장, 리조트 개발 및 운영 전문업체인 F 리조트 그룹이 주요 계열사 계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전국 영업점의 매출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오너일가에게 급여를 부당지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무관청 공무원의 골프대금을 면제해준 뇌물공여 등 범행을 규명하여,

- 오너일가인 그룹 사장 1명, 범행을 기획·주도한 그룹 전무 1명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0명(법인 7개 포함)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향후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임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직책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69세)	F 리조트 그룹 회장	○'05.경부터 등기임원에 불과한 오너일가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부당지급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 4. 불구속 기소

2	B (37세)	F 리조트 그룹 사장 ※ A의 아들	○'15.경부터 등기임원에 불과한 오너일가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부당지급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 D와 공모(D는 일부 공모), 그룹 주요 계열사(영업점 6개)의 계좌가 압류당하자 '14.경부터 '17.경까지 다른 계열사 명의로 약 180억 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킴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 4. 구속 기소
3	C (55세)	F 리조트 그룹 전무	○B, D와 공모(D는 일부 공모), 그룹 주요 계열사(영업점 6개)의 계좌가 압류당하자 '14.경부터 '17.경까지 다른 계열사 명의로 약 180억 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킴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6.경부터 '17.경까지 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 편의제공 목적으로 E에게 6회에 걸쳐 골프대금 540만 원을 면제해 주고, 3회에 걸쳐 179만 원의 면제, 할인을 약속함 [뇌물공여 등]	5. 4. 구속 기소
4	D (50세)	F 리조트 그룹 상무	○B, C와 공모, 그룹 주요 계열사(영업점 3개)의 계좌가 압류당하자 '14.경부터 '17.경까지 다른 계열사 명의로 67억 원 상당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킴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 4. 불구속 기소
5	E (54세)	前○○시청 도시계획과장 (現○○시청 시민소통담당관)	○'16.경부터 '17.경까지 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 편의제공 대가로 C로부터 6회에 걸쳐 골프대금 540만 원을 면제받고, 3회에 걸쳐 179만 원의 면제, 할인을 약속받음 [뇌물수수 등]	5. 4. 불구속 기소
6	F 리조트 그룹 계열사 7개 ※ F 리조트 그룹은,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을 운영 하는 전문업체임		○각 계열사의 사용자인 B, C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계열사 명의를 다른 계열사 영업점에 빌려주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 4. 불구속 기소

2 수사 경과 및 의의

○ 그룹 차원의 대규모·조직적 범행 규명

- F 리조트 그룹의 1개 영업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가맹점 명의대여 등) 경찰 송치사건(피의자 4명) 수사 중, 채권자들의 입회금 반환 압박을 받고 있던 위 그룹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른 영업점에서도 채권자들의 권리 실현을 피하기 위해 불법 여신거래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함
- 이에 그룹 본사 압수수색, 계열사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을 통하여, 위 그룹이 재정 악화로 주요 영업점 매출계좌가 회원들 등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전국 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강제집행면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기획·실행한 점을 규명하여,
-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그룹 사장 1명 및 범행을 기획·주도한 전무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2명(법인 7개 포함)을 기소함

○ 그룹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너일가의 부패범죄 엄단

- F 리조트 그룹이 재정 악화로 영업점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실제 경영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동기임원에 불과한 오너일가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부당지급한 사실을 밝혀냄
- 또한, 위 그룹에서 추진 중인 중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위 그룹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규명하여 엄단함

3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임 ☑